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가합1131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204389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가합113137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조상준, 이유희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담당변호사 김원국

변론 종결 2021. 10. 5.

판결 선고 2021.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권리에 관하여 2019. 10. 21. 체결된 양도계약을

최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C 접수 D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C 접수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C 접수 F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이하 처음 기재하는 것 외에는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와 3차례에 걸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본인'은 B를, '신보'는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신보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단서 생략)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B는 아래 각 발급일 무렵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G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최초 각 보증서 발급 이후 매년 보증기한은 연장되어 왔다.

발급일	2014. 4. 30.	2015. 4. 20.	2016. 5. 16.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	200,000,000원	500,000,000원

발급일	2014. 4. 30.	2015. 4. 20.	2016. 5. 16.
보증금액	90,000,000원 (46,750,000원으로 변경)	180,000,000원 (170,000,000원으로 변경)	4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29. (2020. 4. 24.로 변경)	2016. 4. 19. (2020. 4. 17.로 변경)	2017. 5. 15. (2020. 5. 14.로 변경)
대출과목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		
채권기관	G은행		

다. G은행은 2020. 3. 2.경 원고에게 B의 2020. 2. 29.자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0. 6. 9. B를 대위하여 G은행에 합계 675,829,099원(= 제1보증 47,395,941원 + 제2보증 172,234,710원 + 제3보증 456,198,448원)을 변제하였다.

라. B는 2019. 10. 21. 피고와, 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상표권,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2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C 접수 D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C 접수 E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C 접수 F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 이후이지만, 그 전에 기초적 법률관계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B의 주채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특허권 등이 B의 유일한 재산으로 파악되고, B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더라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외상매출금 등 채권을 제외한 적극재산(2,320,870,124원)보다

소극재산(2,975,391,339원)이 많다. B가 주식회사 K에 신탁한 부동산(시가 2,410,000,000원)은 우선수익권(1순위 K은행 1,680,000,000원, 2순위 주식회사 L 1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적극재산에 산입될 가액은 720,000,000원(= 2,410,000,000원 - 1,680,000,000원 - 10,000,000원) 상당이다.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에 대하여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 당시 B는 자산 약 3,570,000,000원, 부채 약 2,970,000,00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특히 약 2,400,000,000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수한 경위는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의 가맹점주들이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을 살피건대,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20. 2. 29. B가 G은행에 대한 원금 연체, 즉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 체결 전에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B의 G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B가 G은행에 대한 원금 등 상환을 지체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각

특허권 등의 양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특허권 등의 양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부동산이 신탁법상 신탁된 경우에 적극재산으로 되는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고,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은행, K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계약의 체결일인 2019. 10. 21. 기준으로 B의 재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특허권 등, ② B가 K은행에 신탁한 서울 영등포구 M 대 132.6㎡, N 대 9.9㎡와 위 토지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상 수익권(우선수익자 및 수익권금액으로 1순위 K은행 1,680,000,000원, 2순위 L 1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K은행은 2021. 3. 15. 유한회사 O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4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5. 18.경 우선수익금과 신탁보수를 제외한 693,509,648원을 공탁하였다)이 있었다.

소극재산으로는 ① G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G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그 채무액이 합계 5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대위변제 내역(갑 제5호증)에 따르면 그 채무액이 합계 666,750,000원(= 제1보증 46,750,000원 + 제2보증 170,000,000원 + 제3보증 450,0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② 거래처에 대한 채무 480,000,000원이 있었다. 나) B의 제10기(2019. 12. 31.)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모두 포함한 자산총계가 3,570,289,558원인데 그 중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주임종단기채권 항목의 합계가 1,249,419,434원이고, 자산총계에서 위 채권들의 합계액을 공제하면 2,320,870,124원(= 3,570,289,558원 - 1,249,419,434원)이다. 한편 부채총계는 2,975,391,339원이다. 위 재무상태표의 비유동자산 중 무형자산에는 P 개발비 항목으로 52,063,616원만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B는 2019. 10. 21. 피고와, 피고가 B에 10,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48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 이후 피고가 위 채무 480,000,000원을 변제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 후에도 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소극재산으로 G은행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2,410,000,000원에서 우선수익금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금액 합계인 1,690,000,000원을 공제하면 720,000,000원이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우선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공탁한 것도 693,509,648원이어서,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서 G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550,000,000원 또는 666,750,000원인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B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480,000,000원 상당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와 함께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의 가치를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행위 당시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경우 적극재산이 위 금액보다 적게 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B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을 제외한 자산총계가 부채총계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실제로 위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 및 부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명목상 자산 및 부채만을 기준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행위 당시 채무자인 B가 무자력상태에 있었다거나 양도행위로 인하여 B에게 무자력상태가 초래되거나 무자력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행위의 사해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B의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영풍

판사김현주

판사강창호

별지

1) 원고는 '별지 목록에 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1) 특허청 C 접수 D로 마친 특허권의

전부이전등록의, (2) 특허청 C 접수 E로 마친 상표권의 전부이전등록의, (3) 특허청 C 접수 F로 마친 서비스표권의 전부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 기재에 따라 각 전부이전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한다.